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김태호
곽규택 · 구자근 · 이상휘
정동만 · 박수영 · 이종배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지만, 제도의 중심이 오랫동안 설비투자에 치우쳐 실질적인 국내 생산·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국내 생산’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까지 더해지며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도 잠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에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수의 전략산업에서는 생산효율성 제고와 국내공정 유지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제조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대규모 초기투자 단계의 현금흐름 애로를 덜기 위해 미공제액에 대해 충분한 기간(10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해 실제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일본·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연동형 인센티브 흐름과 보조를 맞춰 기업의 리쇼어링·온쇼어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활
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신성장·원천기술사업”이라 한
다)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
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탄소중립,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방
위산업, 발전시스템, 원자력 등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반도체, 이
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
의 100분의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의 산정,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절의6 신성장 · 원천기술 및</u> <u>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u> <u>을 위한 조세특례</u>
<u><신 설></u>	<u>제100조의35(신성장 · 원천기술</u> <u>및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u> <u>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u> <u>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u> <u>·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u> <u>생산하는 사업(이하 “신성장 ·</u> <u>원천기술사업”이라 한다)과 국</u> <u>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u> <u>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u> <u>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u> <u>고 있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u> <u>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탄소중</u> <u>립, 항공 · 우주, 첨단소재 · 부</u> <u>품 · 장비, 방위산업, 발전시스</u> <u>템, 원자력 등 신성장 · 원천기</u> <u>술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u> <u>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u> <u>련 제품, 미래형 운송 · 이동 수</u> <u>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u> <u>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제품을 2030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판매
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
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
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
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
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
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
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
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

	<u>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의 산정,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⑩ (생략) <신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u>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④ (생략) <신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u>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
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
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